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광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 직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 관광해설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광해설사 해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 별표 1종, 별지 1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관광해설사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관광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 관광해설사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문지식 등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선발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등 문화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9 호
----------	---------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관광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 직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라. 관광해설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관광해설사 해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 · 강화 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 없음
- 나. 입법예고(2020. 10. 15. ~ 11. 04.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선발)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및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예절 교육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박탈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위 반 내 용	조치사항
1	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경고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5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6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 박탈
7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
8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9	그 밖에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비 고)

1. ‘자격박탈’된 경우 해설사직에서 자동 해촉되며 향후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수강과 재위촉을 금지함
2. ‘자격박탈’된 사람은 해설사증 등의 관련 물품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1]

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활동분야 :
- 사 유 :
- 기 간 : 20 . . . ~ 20 . .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영등포구청장 귀하